「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 제3조)

- 「의료법」 상의 의원과 병원(재활의료기관 포함) 중 지정기준 충족 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근무인력은 상근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설(물리치료실 등)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함

○ 지정을 위한 평가 등(안 제4조)

- 의료기관은 시설 및 장비 현황, 인력현황 등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기준을 중촉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

○ 운영현황 평가 등(안 제9조)

-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지정 기준의 충족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해야 함

○ 지정의 취소 등(안 제10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 미 충족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불 이행시 지정 취소 가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26.4.3.~4.13.)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 - 000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000호, 2026.00.00.)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6항·제7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4항 등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환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대상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에 해당하는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이며, 해당 상병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

제3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어린이 의료재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등으로 요양기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될 때에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의2 제2호에 따른 필수인력 및 선택인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의료기관 소속에서 상근하여야 한다.

1. 재활의학과 전문의 :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2.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의 면허를 받은 자

3.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언어재활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급 또는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5. 간호사 : 「간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6. 임상심리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임상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④ 규칙 별표 2의2 제3호가목에 따른 각 치료실은 어린이 전문 재활치료를 위하여 독립적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규칙 별표 2의2 제3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말한다.

1. 물리치료실 : 33㎡ 이상
2. 작업치료실 : 18㎡ 이상
3. 언어치료실 : 9㎡ 이상

⑥ 규칙 별표 2의2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필수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물리치료실

가. 하지 에르고미터(소아용)

나. 치료용 매트(소아용)

다. 치료용 벤치(소아용)

라. 치료용 계단(소아용)

마.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FES)(소아용)

바. 전기자극치료기(EST)(소아용)

사. 치료용 볼(소아용)

아. 치료용 롤(소아용)

자. 보행기(소아용)

차. 기립훈련기(소아용)

카. GMFM 평가도구(메뉴얼 포함)

타. 보바스테이블(소아용)

파. 호흡기능 평가도구

2. 작업치료실

가. 작업치료테이블(소아용)

나. 자세유지기구(피더시트 등)

다. 발달평가 도구(베일리 발달평가, 덴버 발달검사)

라. 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소아용)

마. 손기능평가 도구(소아용)

바. 인지기능 훈련도구/교구(소아용)

사. 전산화인지재활치료 기기(소아용)

아. 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기구 등)

자.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소아용)

차. 감각통합치료도구(소아용)

3. 언어치료실

가. 영유아·아동 언어발달검사 도구(SELSI)

나. 취학전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검사 도구(PRES)

다. 수용·표현 어휘력검사 도구(REVT)

라. 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도구(LSSC)

마. 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도구(K-BNT-C)

바. 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및 평가도구(U-TAP)

⑦ 규칙 별표 2의2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자가 100명인 경우를 말한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의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단,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제외)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이학요법료 수가 중 ‘전문 재활치료료’로 분류된 항목

⑧ 제7항에 따른 환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1항제2항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입원환자는 재원일수 1일

당 2명으로, 외래환자는 내원일수 1일당 1명으로 본다.

제4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등) ① 규칙 제13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이하 “지정평가”라 한다)는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의 전년도 1년 간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2의2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는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계획 공고 전까지 지정평가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지정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및 장비 현황,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력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

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의 점수 총계가 상위인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그 밖에 보건의료 체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시설·인력·장비의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 지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제5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재지정 평가) 규칙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재지정을 위한 평가에 관해서는 지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의2제4항·제6항 및 이 고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및 지정 취소

제6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규칙 제1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2. 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3명
3. 규칙 제1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2명
4. 규칙 제12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심사평가원장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평가 및 운영 등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및 준수사항) 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기능회복과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양질의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사 등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기능 평가, 치료계획수립,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적절하게 치료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의 유지 및 향상
2. 환자의 일상생활능력 개선 및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3. 어린이 재활 환자구성 비율의 제고
4. 환자 기능 평가결과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운영현황 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제9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 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2의2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지정 기준 : 매 분기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 : 매 1년
   가. 규칙 별표 2의2 제5호 및 제6호의 지정기준
   나.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등의 평가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③ 심사평가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까지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고시를 공포하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병(제2조 관련)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C71	**뇌의 악성 신생물**	
C71	뇌의 악성 신생물	Malignant neoplasm of brain
G00~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G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Bacterial meningitis, NEC
G0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Meningitis in bacterial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02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Meningitis in other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0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Meningitis due to other and unspecified causes
G04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Encephalitis, myelitis and encephalomyelitis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Encephalitis, myelitis and encephalomyeliti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06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Intracranial and intraspinal abscess and granuloma
G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Intracranial and intraspinal abscess and granuloma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0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ntracranial and intraspinal phlebitis and thrombophlebitis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Sequelae of inflammatory diseases of central nervous system
G10~12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0	헌팅톤병	Huntington's disease
G11	유전성 운동실조	Hereditary ataxia
G1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Spinal muscular atrophy and related syndromes
G20~26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G20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G21	이차성 파킨슨증	Secondary parkinsonism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G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Parkinsonism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2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Other degenerative diseases of basal ganglia
G24	근긴장이상	Dystonia
G25	기타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Other extrapyramidal and movement disorders
G2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추체외로 및 운동 장애	Extrapyramidal and movement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35~37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질환**	
G35	다발경화증	Multiple sclerosis
G36	기타 급성 파종성 탈수초	Other acute disseminated demyelination
G37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탈수초질환	Other demyelinating diseases of central nervous system
G40~41	**뇌전증 및 뇌전증지속상태**	
G40	뇌전증	Epilepsy
G41	뇌전증지속상태	Status epilepticus
G50~59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장애**	
G50	삼차신경의 장애	Disorders of trigeminal nerve
G51	안면신경장애	Facial nerve disorders
G52	기타 뇌신경의 장애	Disorders of other cranial nerves
G5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신경장애	Cranial nerve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54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Nerve root and plexus disorders
G5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Nerve root and plexus compression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56	팔의 단일신경병증	Mononeuropathies of upper limb
G57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Mononeuropathies of lower limb
G58	기타 단일신경병증	Other mononeuropathies
G5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Mononeuropathy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60~64	**다발신경병증 및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60	유전성 및 특발성 신경병증	Hereditary and idiopathic neuropathy
G61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Inflammatory polyneuropathy
G62	기타 다발신경병증	Other polyneuropathies
G6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Polyneuropathy in diseases classified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elsewhere
G64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peripheral nervous system
G70~73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질환**	
G70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Myasthenia gravis and other myoneural disorders
G71	근육의 원발성 장애	Primary disorders of muscles
G72	기타 근병증	Other myopathies
G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근접합부 및 근육의 장애	Disorders of myoneural junction and muscle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80~83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80	뇌성마비	Cerebral palsy
G81	편마비	Hemiplegia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Paraplegia and tetraplegia
G83	기타 마비증후군	Other paralytic syndromes
G90~99	**신경계통의 기타장애**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Disorders of autonomic nervous system
G91	수두증	Hydrocephalus
G92	독성뇌병증	Toxic encephalopathy
G93	뇌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brain
G9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brain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G95	척수의 기타 질환	Other diseases of spinal cord
G96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central nervous system
G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처치후 장애	Postprocedural disorders of nervous system, NEC
G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nervous system, NEC
G9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Other disorders of nervous system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I60~69	**뇌혈관질환**	
I60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aemorrhage
I61	뇌내출혈	Intracerebral haemorrhage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Other nontraumatic intracranial haemorrhage
I63	뇌경색증	Cerebral infarction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Stroke, not specified as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haemorrhage or infarction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Occlusion and stenosis of precerebral arteries, not resulting in cerebral infarction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Occlusion and stenosis of cerebral arteries, not resulting in cerebral infarction
I67	기타 뇌혈관질환	Other cerebrovascular diseases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Cerebrovascular disorders in diseases classified elsewhere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Sequelae of cerebrovascular disease
P05, P07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P05	태아성장지연 및 태아영양실조	Slow fetal growth and fetal malnutrition
P0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기임신 및 저체중출산에 관련된 장애	Disorders related to short gestation and low birth weight, NEC
P10~11, P13~15	**출산외상**	
P10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Intracranial laceration and haemorrhage due to birth injury
P11	중추신경계통에 대한 기타 출산손상	Other birth injuries to central nervous system
P13	골격의 출산손상	Birth injury to skeleton
P14	말초 신경계통의 출산손상	Birth injury to peripheral nervous system
P15	기타 출산손상	Other birth injuries
P20~22, P2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P20	자궁내저산소증	Intrauterine hypoxia
P21	출산질식	Birth asphyxia
P22	신생아의 호흡곤란	Respiratory distress of newborn
P24	신생아흡인증후군	Neonatal aspiration syndromes
P5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태아 및 신생아의 두개내 비외상성 출혈	Intracranial nontraumatic haemorrhage of fetus and newborn
P57	**핵황달**	
P57	핵황달	Kernicterus
P90~9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P93~94		
P90	신생아의 경련	Convulsions of newborn
P91	신생아 대뇌상태의 기타 장애	Other disturbances of cerebral status of newborn
P93	태아 및 신생아에게 투여한 약물의 반응 및 중독	Reactions and intoxications due to drugs administered to fetus and newborn
P94	신생아의 근긴장도의 장애	Disorders of muscle tone of newborn
Q00~07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	무뇌증 및 유사 기형	Anencephaly and similar malformations
Q01	뇌류(腦瘤)	Encephalocele
Q02	소두증	Microcephaly
Q03	선천수두증	Congenital hydrocephalus
Q04	뇌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brain
Q05	이분척추	Spina bifida
Q06	척수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spinal cord
Q07	신경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nervous system
Q11, Q16, Q18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11	무안구증, 소안구증 및 대안구증	Anophthalmos, microphthalmos and macrophthalmos
Q16	청력장애를 유발하는 귀의 선천기형	Congenital malformations of ear causing impairment of hearing
Q18	얼굴 및 목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face and neck
Q35, Q37	**구순열 및 구개열**	
Q35	구개열	Cleft palate
Q37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Cleft palate with cleft lip
Q65~74, Q76~79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	고관절의 선천변형	Congenital deformities of hip
Q66	발의 선천변형	Congenital deformities of feet
Q67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 변형	Congenital musculoskeletal deformities of head, face, spine and chest
Q68	기타 선천성 근골격변형	Other congenital musculoskeletal deformities
Q69	다지증	Polydactyly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Q70	합지증	Syndactyly
Q71	팔의 감소결손	Reduction defects of upper limb
Q72	다리의 감소결손	Reduction defects of lower limb
Q73	상세불명 사지의 감소결손	Reduction defects of unspecified limb
Q74	사지의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of limb(s)
Q76	척추 및 골성 흉곽의 선천기형	Congenital malformations of spine and bony thorax
Q77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골연골형성이상	Osteochondrodysplasia with defects of growth of tubular bones and spine
Q78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Other osteochondrodysplasias
Q7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Congenital malformations of musculoskeletal system, NEC
Q86~87, Q89	**기타 선천기형**	
Q8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알려진 외인으로 인한 선천기형증후군	Congenital malformation syndromes due to known exogenous causes, NEC
Q87	다발계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증후군	Other specified congenital malformation syndromes affecting multiple systems
Q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선천기형	Other congenital malformations, NEC
Q90~93, Q95~96, 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이상**	
Q90	다운증후군	Down's syndrome
Q91	에드워즈증후군 및 파타우증후군	Edwards' syndrome and Patau's syndrome
Q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통염색체의 기타 삼염색체증 및 부분삼염색체증	Other trisomies and partial trisomies of the autosomes, NEC
Q9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보통염색체의 단일염색체증 및 결손	Monosomies and deletions from the autosomes, NEC
Q9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균형된 재배열 및 구조 표지자	Balanced rearrangements and structural markers, NEC
Q96	터너증후군	Turner's syndrome
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염색체이상	Other chromosome abnormalities, NEC
R62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R62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Lack of expected normal

상병기호	한글명	영문명
		physiological development
T90~9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	
T90	머리손상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of head
T91	목 및 몸통 손상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of neck and trunk
T92	팔손상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of upper limb
T93	다리손상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of lower limb
T94	다발성 및 상세불명의 신체부위를 침범한 손상의 후유증	Sequelae of injuries involving multiple and unspecified body regions
T95	화상, 부식 및 동상의 후유증	Sequelae of burns, corrosions and frostbite
T96	약물, 약제 및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중독의 후유증	Sequelae of poisoning by drugs, medicaments and biological substances
T97	출처가 주로 비의약품인 물질의 독성효과의 후유증	Sequelae of toxic effects of substances chiefly nonmedicinal as to source
T98	외인의 기타 및 상세불명 영향의 후유증	Sequelae of other and unspecified effects of external causes

[별표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상대평가의 기준(제4조제5항 관련)

1. 상대평가 항목별 가중치

※ 상대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비율이 높은 기관 우선 지정

평가 대상		가중치
진료량	절대 진료량	20%
	권역 내 상대 진료량	20%
어린이재활 환자구성비율	구성비율	22.5%
	실환자 수	22.5%
학령기청소년기 환자비율		5%
의료인력 등 1인당 환자수	재활의학과 전문의	4%
	소아재활발달의학 인증의	가점 2%(근무시)
	물리치료사	1.5%
	작업치료사	1.5%
	언어재활사	1.5%
	사회복지사	1.5%
	간호사	가점 1%(근무 시)
	임상심리사	가점 1%(근무 시)
합계		**100%(가점 4%)**

2. 평가 항목별 구간 및 구간별 배점

평가 항목										
배점	진료량(40%)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비율(45%)		학령기 청소년기 환자비율 (5%)	의료인력 등 1인당 1일 환자수				
	절대 진료량[1]	상대 진료량[2]	구성 비율[3]	실환자 수[4]		재활의학과 전문의 (4%)	물리치료사 (1.5%)	작업치료사 (1.5%)	언어재활사 (1.5%)	사회복지사 (1.5%)
10점	25,000명 이상	100%	90% 이상	300명 이상	20% 이상	45명 이하	6명 이하	9명 이하	6명 이하	6명 이하
8점	25,000명 미만~ 20,000명 이상	100% 미만 ~ 80% 이상	90% 미만 ~ 70% 이상	300명 미만 ~200명 이상	20% 미만 ~ 15% 이상	45명 초과~ 55명 이하	6명 초과~ 9명 이하	9명 초과~ 12명 이하	6명 초과~ 9명 이하	6명 초과~ 9명 이하
6점	20,000명 미만~ 15,000명 이상	80% 미만 ~ 60% 이상	70% 미만 ~ 50% 이상	200명 미만 ~150명 이상	15% 미만 ~ 10% 이상	55명 초과~ 65명 이하	9명 초과~ 12명 이하	12명 초과~ 15명 이하	9명 초과~ 12명 이하	9명 초과~ 12명 이하
4점	15,000명 미만~ 10,000명 이상	60% 미만 ~ 4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150명 미만 ~100명 이상	10% 미만 ~ 5% 이상	65명 초과~ 75명 이하	12명 초과~ 15명 이하	15명 초과~ 18명 이하	12명 초과~ 15명 이하	12명 초과~ 15명 이하
2점	10,000명 미만~ 5,000명 이상	4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100명 미만 ~ 20 명이상	5% 미만	75명 초과~ 90명 이하	15명 초과~ 20명 이하	18명 초과~ 20명 이하	15명 초과~ 20명 이하	15명 초과~ 20명 이하

1) 절대진료량: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환자

2) 상대진료량: (권역 내 대상 기관수-권역 내 대상기관 중 절대진료량 순위+1)/권역 내 대상 기관수x100

3) 구성비율 =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환자 수) / (전체전문재활환자 수)x100

4) 실환자 수= 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를 받은 실환자 수

5) 학령기 청소년기 환자비율 = (6세 이상~18세 이하 전문재활치료 환자) / (전체 전문재활환자)x100

6) 의료인력 등 1인당 1일 환자수 = (전체전문재활환자) / (의료인력 등 총 재직일수)

3. 평가기준

가. 평가 대상별 산출 기준

상대평가 대상 자료는 지정 계획을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 1년간 진료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나. 평가방법

1) 평가 대상별 점수와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점수의 총계(이하 '총점'이라 한다.)를 구한다.
2) 제4조제6항에 따라 총점이 상위인 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권역에서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어린이 재활환자 구성 비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00. 00.>

시설 및 장비 현황(　　년　월　일 기준)

□ 기본현황

요양기관명	요양기호

□ 물리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유무

□ 작업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유무

□ 언어치료실

설치유무	총면적	장비유무

※ 작성방법
- **설 치 유 무**: 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이 있는 경우 Y로 표시, 없는 경우 N로 표시
- **총　면　적**: 해당 시설의 총 면적을 기재(㎡)
  (충족기준: 소아물리치료실 33㎡, 소아작업치료실 18㎡ 이상, 소아언어치료실 9㎡ 이상)

- **물리치료실 장비유무**: 아래의 필수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 Y로 표시
  ①하지 에르고미터(소아용) ②치료용 매트(소아용) ③치료용 벤치(소아용) ④치료용 계단(소아용) ⑤기능적 전기자극치료기(FES)(소아용) ⑥전기자극치료기(EST)(소아용) ⑦치료용 볼(소아용) ⑧치료용 롤(소아용) ⑨보행기(소아용) ⑩기립훈련기(소아용) ⑪GMFM 평가도구 (매뉴얼 포함) ⑫보바스 테이블(소아용) ⑬호흡기능 평가도구
- **작업치료실 장비유무**: 아래의 필수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 Y로 표시
  ①작업치료테이블(소아용) ②자세유지기구(피더시트 등) ③발달평가 도구: 베일리 발달평가, 덴버 발달검사 ④일상생활동작 평가 도구(소아용) ⑤손기능평가 도구(소아용) ⑥인지기능 훈련도구/교구(소아용) ⑦전산화인지재활치료 기기(소아용) ⑧일상생활동작 연습기구(식사기구 등) ⑨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소아용) ⑩감각통합치료도구(소아용)
- **언어치료실 장비유무**: 아래의 필수장비를 모두 갖춘 경우 Y로 표시
  ①영유아·아동 언어발달검사 도구(SELSI) ②취학전 아동의 수용·표현 언어검사 도구(PRES) ③수용·표현 어휘력검사 도구(REVT) ④학령기 아동 언어검사 도구(LSSC) ⑤아동용 한국판 보스턴 이름대기 검사 도구(K-BNT-C) ⑥우리말 조음음운 학습 및 평가도구(U-TAP)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00. 00.>

인력 현황

가. 의 사

(단위: 명)

구 분	전문의 수	비고
계		
재활의학과		
기타		**※ 소아재활발달의학 인증의 수 : 명**

나. 어린이 재활 진료 지원 인력

(단위: 명)

구 분		인 원 수	비고
총 계			
간 호 직	간 호 사		
의료기사 등	**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병동(낮병동) 운영 여부		예 □ 아니오 □	

※ 작성방법
- 해당 의료기관의 상근 근무자(주 5일 40시간 이상) 기준으로 작성.단, 간호사의 경우 전일제 간호사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인 근무자인 경우 작성